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에서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 첨부(안 제23조, 별지 제9호)
- 나. 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점검자 경력수첩”으로 제출(안 제37조)
- 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의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 “표”의 용어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7 제2호)
- 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용어 수정(안 별지 제16호)
- 마. 소방시설등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의 첨부서류 중 국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생략 등(안 별지 제30호)
- 바. 기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치된 조문 표기 등 모호한 규정 개선(안 별표4 제6호 및 제8호, 안 별표7 제1호 및 제4호, 안 별지 제23호, 안 별지 제24호, 안 별지 제31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약서

제37조제1항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 수첩”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가목의 1류의 대상용도란 중 “지하가”를 “지하상가, 터널”로 하고, 같은 목 3류의 대상용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자체비”를 “자재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기술인력	특급점검자 (관리사 경력 5년이상)	특급점검자 (관리사 경력 5년 미만)	특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
가중치	3.5	3.0	2.5	2	1.5	1

별표 7 제4호가목2) 중 “(ISO)”를 “(ISO 9000 시리즈)”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점검면적액”을 “점검실적액”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의 8쪽 중 제1쪽의 하단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중 “등록번호”를 “발급번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이후 3개월간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본문)

현행	개정안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생략)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약서</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37조(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① ----- ----- ----- ----- ----- ----- -----.

1. · 2. (생략) 3.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u>국가기술자격증</u>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생략) ② ~ ④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 <u>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u> -----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 (중략) ~~ 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 ----- ----- ----- -----.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가.----- -----.
1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교정시설, 발전시설, <u>지하가</u> , 복합건축물	1류:----- ----- ----- ----- ----- <u>지하상가, 터널</u> , 복합건축물
2류: (생략)	2류: (현행과 같음)
3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문화재</u>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3류:----- <u>국가유산</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8.----- ----- -----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검의 경우	-----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	-----
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	-----
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별표 7]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계산식 생략> 가. 점검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u>자재비</u>를 제외한다) 및 대행실적액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1) ~ 3) (생략) 나. ~ 바. (생략)	1.----- ----- 가.----- <u>자재비</u> ----- ----- ----- -----. 1) ~ 3) (현행과 같음) 나. ~ 바. (현행과 같음)
2.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계산식 생략> 가. (생략) 나.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 2) (생략) 3)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	2.----- -----. 가. (현행과 같음) 나.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 2) (현행과 같음) 3) 보유 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

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u>주된 기술인력</u>		보조 기술인력			
	관리사 (경력 5년이상)	관리사	특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
가중치	3.5	3.0	2.5	2	1.5	1

3. (생 략)

4.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 (중 략) ~~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계산식 생략>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소방시설관리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

3)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의 점검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계산식>

점검능력평가액 = (전년도 전체 평균 실적액 × 10/100) + (기술인력 가중치 1인당 평균 점검면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50/100)

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u>특급점검자</u> (관리사 경력 5년이상)	<u>특급점검자</u> (관리사 경력 5년 미만)	특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
가중치	3.5	3.0	2.5	2	1.5	1

3. (현행과 같음)

4.-----

-----.

가. -----
-----.

1) (현행과 같음)

2) -----
-----(ISO 9000 시리즈)--

3) ~ 4) (현행과 같음)

5.-----

----.

<계산식>

점검능력평가액 = (전년도 전체 평균 실적액 × 10/100) + (기술인력 가중치 1인당 평균 점검 실적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50/100)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생년월일	합격연월일	
자격번호	제 호		
주소			
재발급신청 사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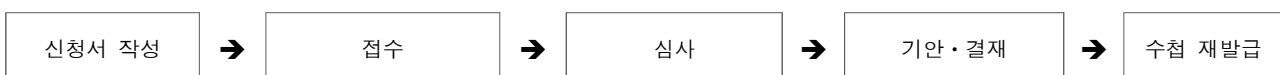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분증 사본 3. 사진(3cm×4cm) 1장	수수료 1만원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시 · 도

130mm×80mm[백상지(150g/㎡)]

(제1쪽)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업등록 구분	[]전문 []일반				
보유기술자 명단					
기술인력			기술인력		
경력수첩발급번호	등급	성명	경력수첩발급번호	등급	성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년 월 일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30mm×80mm[백상지(150g/㎡)]

(제2쪽)

보유기술자명단					
기술인력			기술인력		
경력수첩발급번호	등급	성명	경력수첩발급번호	등급	성명

130mm×80mm[백상지(150g/㎡)]

(제3쪽)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된 내용	확인

130mm×80mm[백상지(150g/㎡)]

등록번호
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업등록 구분: []전문 []일반

영업소 소재지

소방기술자 보유 현황

기술인력

기술인력

경력수첩발급번호

П/П
П/С

성명

경력수첩발급번호

U/C

성명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소방시설등 점검 내용	대상명		업종
	점검지역		점검현장
	발주자		원도급자
	계약연월	점검시작일	점검종료일
	계약방법	도급종류	점검종류
소방시설 점검실적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총 도급 계약금액	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전년까지의 미기성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등록번호	하도급금액
복합실적 내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실적(종)별	도급금액	비고
		합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표자)

귀하

(발주자 및 원도급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자 상호:

대표자: (인)

전화번호:

첨부 서류	1. 소방시설등 점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비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발주한 점검실적의 경우 상기 첨부서류 생략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